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86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제26조제1항제5호가목·바목 및 같은 조 제6항”을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제76조제4항·제5항·제7항 및 제8항”을 “제76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1) 중 “2억원”을 “4억원”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8천만원”을 “1억6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목 3) 본문, 같은 목 4) 및 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26조제1항제2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를 “어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항”을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를 “어느”로 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을 “제14조의2제1항”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가목 중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을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입찰자”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평가”를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6조제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란 「산업안전보건

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76조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제8호”를 “법 제27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를 “계약을 이행하면서”로,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위해를 가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제1호 중 “제7호·제8호”를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제5항(중전의 제4항) 및 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본문 중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제76조제9항(중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6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2.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경우

제76조제11항(중전의 제10항)제2호 중 “제9항제2호”를 “제10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2항) 중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중전의 제13항) 중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 영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을 “이 영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76조의5제2항제1호 본문 중 “조달청의”를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의”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한다.

제76조의7제1항제4호 중 “중앙관서(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를 “중앙관서”로 한다.

제76조의12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안에 대해 미리 심의하여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된 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제104조 본문 중 “입찰자 중”을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10조제1항제1호가목 중 “30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3억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1억5천만원”을 각각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3.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정산과 관련한 사항
5.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76조제9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제9조의2제1항제3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으로 한다.

◇개정이유

국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16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중대한 위해의 범위를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 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관련 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해당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조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수의계약 허용(제26조제1항제3호차목 신설)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 제품을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포함함.

나. 소액 수의계약 허용기준 완화 및 1인 견적이 가능한 계약 대상 확대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현행 제26조제6항 삭제)

조달기업의 경기침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계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소액 수의계약 특례를 상시화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계약을 하는 경우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 계약 체결 명시(제42조제4항 및 제104조, 제43조제1항 후단 및 제43조의3제1항 후단 신설)

종합 심사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령에 명시함.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중대한 위해의 범위 구체화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개선(제76조제1항 신설, 제76조제9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인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마.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제110조제1항 및 제2항)

조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 최소 금액 기준을 낮추고, 이의신청의 대상을 입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등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